

원상회복 등 명령서

명령을 받는 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위 반 내 용	위반사항	
	소재지	
조치 명령 사 항	원상회복 등 면적	m ²
	조치 명령 이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조치 내용	

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유산청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안내사항

-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